

의안번호	제736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조성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성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조성태, 최정훈, 안지윤,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
오영탁

1. 개정이유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일부개정 및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인용하는 정의 조항의 내용으로 변경하고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협력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정비(안 제4조)
-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운영 근거 마련 (안 제6조)
-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협력 조항 정비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서문화진흥법」, 「충청북도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- 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”을 “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<u>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</u> 서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<u>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</u> 서점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)</p> <p>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독서 문화 진흥 사업) ①~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독서 문화 진흥 사업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</u></p>

제7조(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)

<신 설>

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)

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독서문화진흥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10. 31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, 2023. 10. 31.>

제13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·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책 읽는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독서 문화 행사 운영
-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

○ 사업내용 : 독서 사진 공모전, 독서마라톤 등 공모 및 행사 운영

○ 사업량 : 500명

* 독서 사진 공모전(200명), 독서마라톤(200명), 우리동네도서관 자랑하기(100명)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독서 문화 진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6조(독서 문화 진흥 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

나. 추계 결과 :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35,000천원 소요

-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정착에 따른 참여자 증가 반영

다. 재원조달방안 : 지방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
세 출	35,000	5,000	6,000	7,000	8,000	9,000
재원 조달	35,000	5,000	6,000	7,000	8,000	9,000
자체수입 (지방세)	35,000	5,000	6,000	7,000	8,000	9,000